

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2130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9월 4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24년 8월 8일 이종환 의원이 발의하고 20명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1978호)과 김기덕 의원이 8월 12일 발의하고 12명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 제2031호)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,

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각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 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(공유재산의 대부) 등에서 “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, 수익하게 하거나 수익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” 개정되어 2024년 9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.

- 이에 안 제1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를 신설하여 ‘시체육회와

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,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수의계약 등으로 위탁할 수 있는 별도 조항 신설(안 제18조의2)

#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·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(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)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,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

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8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·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(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)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,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</p>

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다.